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대군인에 대한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19083호, 2022. 12. 13. 공포, 2023. 6. 14. 시행)됨에 따라,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,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2세,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1세 연장하는 등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입학연령 상한 연장)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(이하 “제대군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.

1.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3세
2.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2세
3.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1세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입학연령 상한 연장) 법</u> <u>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「제대</u> <u>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u>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</u> <u>인(이하 “제대군인”이라 한다)</u> <u>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</u> <u>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.</u> <u>1.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</u> <u>전역한 제대군인: 3세</u> <u>2.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</u> <u>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</u> <u>2세</u> <u>3.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</u> <u>전역한 제대군인: 1세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244